

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

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2의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)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성범죄 경력 조회

- 대상자 :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
(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(단, **진로진학상담전공 제외**))
- 무시험검정원서 서식에 포함된 <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>에 동의한 경우, 교직팀에서 일괄적으로 조회 요청예정 (신청인이 제출할 필요 없음).
단, 동의하지 않은 경우, 신청인이 직접 <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>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
- 유의사항 :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

2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

- 대상자 :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
(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(단, **진로진학상담전공 제외**))
-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**“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” 1부(원본)**를 포함하여 제출
(※ 원본 미제출시 불인정 : 사진촬영, PDF파일, 이메일제출 등 불가)

<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검사 절차>

1) 검진방법

: 의료기관 개별 검사 → (2~3일 후) 의료기관 재방문하여 “검사결과통보서” 발급/제출
(의료기관에 따라 검사 비용 및 결과통보서 발급기간 상이)

검사내용	결과	내용	비고
검사 (TBPE, 4대 마약 시약검사)	음성	검사결과통보서 발급 후 제출 (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)	- 의료기관 방문 수령
	양성	2차 검사(재검사) 또는 의사 상담 후, 진단서 발급 후 제출(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)	- 의료기관 방문 수령 -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, ‘양성’ 반응 우려가 있어 의사 진단서 추가 제출 (<u>결과통보서+진단서</u>) - 진단서에 의사 상담내용 기재 필요→ “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”

- 2) 서류 유효기간 :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·발급된 서류 까지 인정

(예시) '21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'20년 1월~'21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발급된 서류 인정

※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

- 3) 유의사항 : 검사 결과 “양성”일 경우(치료용 제외)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

- 4) 검진기관 : 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가정의학과, 내과 등(병원 사전 확인 필요)

진단 기관(개인별 선택 가능) 및 비용

• **건강관리협회(메디체크) 전국지부 : 교육부 협약체결기관**

- 국가건강검진(2년마다 1회) 시, 해당 검사를 포함하고, 교사자격취득 시 별도 검사결과통보서를 활용 가능합니다.

국가건강검진 병행 5,000원 / 비병행 단독검사 6,000원

• **일반의료기관 : hikorea.go.kr(법무부지정 의료기관*)에 사전문의가 필요합니다.**

7,000원 ~ 25,000원

*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검진기관

- 1차 검사 양성 반응(일부 감기약 등 가능) 시, 4대 시약검사를 통한 2차 검사가 가능합니다. (TBPE검사보다 많은 비용 소요)

[참고]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방법

구분	사전에예약명	검사결과통보서 수령
대학, 대학원 등	- 교사자격취득용 검사-대학* * 지역명이나 대학명이 아닌 “대학”으로 예약 ※ 대학명 또는 지역명으로 예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.	개별 방문수령 필요

※ 교직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[\[바로가기\]](#)